

	<h2>응급구조학과운영규정</h2>	규정번호	3-3-56
		제정일자	2026. 3. 1.
		개정일자	-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민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응급구조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대학의 제 규정이 이 규정에 우선하며 응급구조학과 내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과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적용된다.

제3조(준수의무) 응급구조학과 교수, 조교,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2 장 교육과정

제4조(교육과정 편성) ① 응급구조학과 교육과정은 대학의 학칙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교과목 이수 체계에 근거하여 전공필수, 전공선택 등으로 구성한다.

② 교과목은 기초의학, 전문응급처치학총론, 응급환자평가 및 관리, 전문응급처치학각론, 법령, 통합실습으로 포함하여 92학점 이상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편성한다.

③ 실습교과목은 이론과 실습 시수의 적절한 배분으로 최소 실습기준(5주 이상)을 준수하여 운영한다.

1. 임상현장실습 교과목은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며, 1학점 당 4시간 × 15주로 60시간을 준수한다.
2. 구급현장실습 교과목은 최소 3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며, 1학점 당 4시간 × 15주로 60시간을 준수한다.

제 3 장 수업, 성적평가, 장학 및 졸업

제6조(수업 및 성적평가) 수업운영 및 학업성적 평가는 대학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따른다.

제7조(장학) 교내·외 장학생 선정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학과 교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.

제8조(졸업이수학점) 졸업이수학점은 최소 110학점 이상으로 한다.

제 4 장 교원

제9조(교원 초빙) ① 전임교원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,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면허 소지, 학술 역량과 현장 전문성을 갖춘 자를 자격 조건으로 한다.

②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학생 20명당 1명 이상의 교원을 확보한다.

③ 교원 중 전임교원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이며, 전임교원 중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「의료법」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의 자격 소지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.

④ 비전임교원(겸·초빙 교원, 강사) 자격 조건은 담당 전공교과목의 수업 지도를 위해 요구되는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,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.

제10조(교수시간) ① 응급구조학과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12시간으로 한다. 다만, 보직교원의 시수는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.

- 제11조(학생지도) ① 응급구조학과 전임교원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서 배정된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담당한다.
- ② 학업, 학교생활 적응, 진로 및 취업지도를 위해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학생지도를 시행한다.
- ③ 학생자치활동 운영을 지도한다.
- ④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및 정신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의 동의 시 교내 상담 전문인력에 의뢰하고 연계상담을 진행한다.

제 5 장 위 원 회

- 제12조(설치 및 구성) ① 응급구조학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수회,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교원 중에서 임명하며, 위원은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응급구조학과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.

제 6 장 학과장의 책무

- 제13조(학과장의 임무) ① 응급구조학과 학과장은 응급구조학과 업무를 총괄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는 등 응급구조학과 운영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책임을 진다.
- ② 응급구조학과 학과장은 응급구조학과를 대표하여 학교 운영관련 각종회의 등 정책결정, 의사결정 등에 참여한다.
- ③ 응급구조학과 학과장은 응급구조학과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본부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, 대학본부의 정책을 응급구조학과 구성원에게 전달하고 정책을 수행한다.
- ④ 응급구조학과 학과장은 응급구조학과를 대표하여 대외 활동에 참여하고, 협력적 관계를 구축한다.
- ⑤ 기타 응급구조학과 학과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관련하여 학과장의 책무로 판단되는 사항을 총괄하고 책임을 진다.

제 7 장 조 교

- 제14조(조교 임용) ① 응급구조학과 행정 및 실습교육 지원을 위해 조교를 두며, 역할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응급구조학과 전담으로 소속된 직원으로 실습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
 2. 응급구조사, 의료기사 등 보건계열 자격·면허 소지자로 실습이 가능한 자
- ② 조교의 임용, 처우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제15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 관련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조교 임용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27학년도에 임용되는 조교부터 적용한다.